

報道資料

(2001. 6. 22)

이 자료는 2001년 6월 23일(토)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主題 : 금융규제 완화 방안

主要內容

韓國金融研究院(원장 : 丁海旺)은 6월 22일(금) 오후 보광 휘닉스파크 회의실에서 「금융규제 완화 방안(발표 : 이재연 박사)」 이란 주제로 재경부 출입 기자단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붙임 : 발표문 원문 1부.

韓國金融研究院

이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 혹은 확인하실 일이 있으시면,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3705-6356~7, 이재연 박사

금융규제 완화방안

2001. 6. 22

李載演



- 目 次 -

<要 約>

1. 문제제기	1
2. 금융규제 실태 및 규제완화 추진현황	2
가. 금융규제의 필요성	2
나. 규제완화의 필요성	7
다. 규제완화 추진 현황	9
3. 향후 금융규제 정비방안	12
가. 사후 감독의 강화	13
나. 업무영역의 확대	14
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15
라. 비명시적 규제의 폐지	16
마. 유인부합적 규제로의 전환	17
4. 규제완화시 유의사항	17
가. 규제완화시 문제점	17
나.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사례	18
5. 마침글	19

- 표 目次 -

<표 1> 1998년 금감위 및 재경부의 주요 금융업부문별

규제정비실적 11

- 그림 目次 -

<그림 1> 사전적 규제의 규제목적별 분류 6

— 要 約 —

- 정보의 비대칭성 및 외부성을 갖는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일반기업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
- 금융규제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복잡·다기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규제비용이 수익을 초과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
 - 정부의 정확한 시장 및 기업경영 파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중대한 정책실패를 초래할 위험 확대
 - 각종 금융규제가 진입규제로 작용함으로써 금융시장내 경쟁둔화 및 금융기관의 외형성장 추구로 금융시장의 낙후 초래
 - 금융시장의 낙후는 타산업에 대한 자금증기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
 -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시장성숙 및 국제화에 따라 정부개입에 의한 인위적 자원배분으로부터의 순기능 저하
- 규제완화의 기본방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한적 규제의 완화 및 감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전성 규제의 강화
 -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완비하고 감독기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구비하여 사후감독을 강화
 - 금융권별 고유업무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되 기타 업무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함으로써 업무영역을 확대
 - 신상품 개발 등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업무영역 제한을 장기적으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 규제내용의 합목적성 결여로 정부 및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큰 비명시적 규제를 폐지

— 금융기관 자체 유인에 따라 행동하는 유인부합적 규제체계 구축

- 그러나 준비없는 규제완화는 규제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경보시스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감독기관 전문성 강화 등 철저한 보완대책의 마련 필요

1. 문제제기

- 금융규제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기관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비용이 수익을 초과함에 따라 완화되고 있음.
 - 규제완화의 주요 이유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으로써,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
 - 이에 따라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건전성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
- 국내에서도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1991년부터 4단계에 걸친 금리자율화가 실시되는 한편 금융기관의 경영, 인사 및 조달·운영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왔으며,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통화관련 규제는 총 928건이었으나, 2001년 6월 9일까지 429건이 폐지되고 157건이 신설되었으며 142건이 추가 등록되는 등 총 317건이 증가되어, 현재 816건이 규제사항으로 등록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나친 규제완화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기관이용자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독강화 등의 보완대책 마련이 중요
- 본고에서는 금융규제의 필요성,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필요성, 규제완화 방향 및 문제점, 규제완화의 대응방안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함.

2. 금융규제 실태 및 규제완화 추진현황

가. 금융규제의 필요성

- 전통적으로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해 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일반기업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여 왔음.
 - 금융규제의 주요목표는 금융산업의 시장실패, 즉 외부성, 시장독점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임.
 -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목적외에도 경제 및 산업정책상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배분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이 더 강조되어 왔음.
-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주요 이유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지급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불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임.
 - 금융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전염효과가 큰 관계로 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위험(시스템 리스크)이 매우 높음.
 - 또한 금융기관들이 공동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발생하는 네트워크효과 등도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여타 산업과 달리 감독기관을 통해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 또한 정부의 개입은 금융기관의 파산, 사기, 기회주의적(opportunistic)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위험으로부터 금융기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특히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중개하는 예금기관과 예금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예

금기관에 대한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예금자를 대신하여 이들의 보호 및 이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사전적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자기자본 규제 등 금융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의 개입은 금융시장 참여자간 공정한 경쟁여건 및 효율적 성과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짐.
 - 금융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독점은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 개입은 제한된 금융자원을 중점 육성산업에 집중함으로써 단기간내에 경제성장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과거 정부는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왔음.
 - 금융기관은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국내외에서 조달하여 수출기업 등 국가전략산업에 집중 배분하는 통로로 활용됨으로써 우리경제가 빙곤의 악순환에서 탈피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하는데 기여하였음.
- 정부는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일부활동을 법 또는 규정으로 규제하여 왔으며 규제형태는 목적에 따라 다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 통화정책상의 규제는 신용통제 등을 통해 신용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금배분규제는 시장에 의존할 경우 시설투자 및 중소기업 등 경

제에 꼭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배분되지 않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문으로의 자금배분을 시정하기 위해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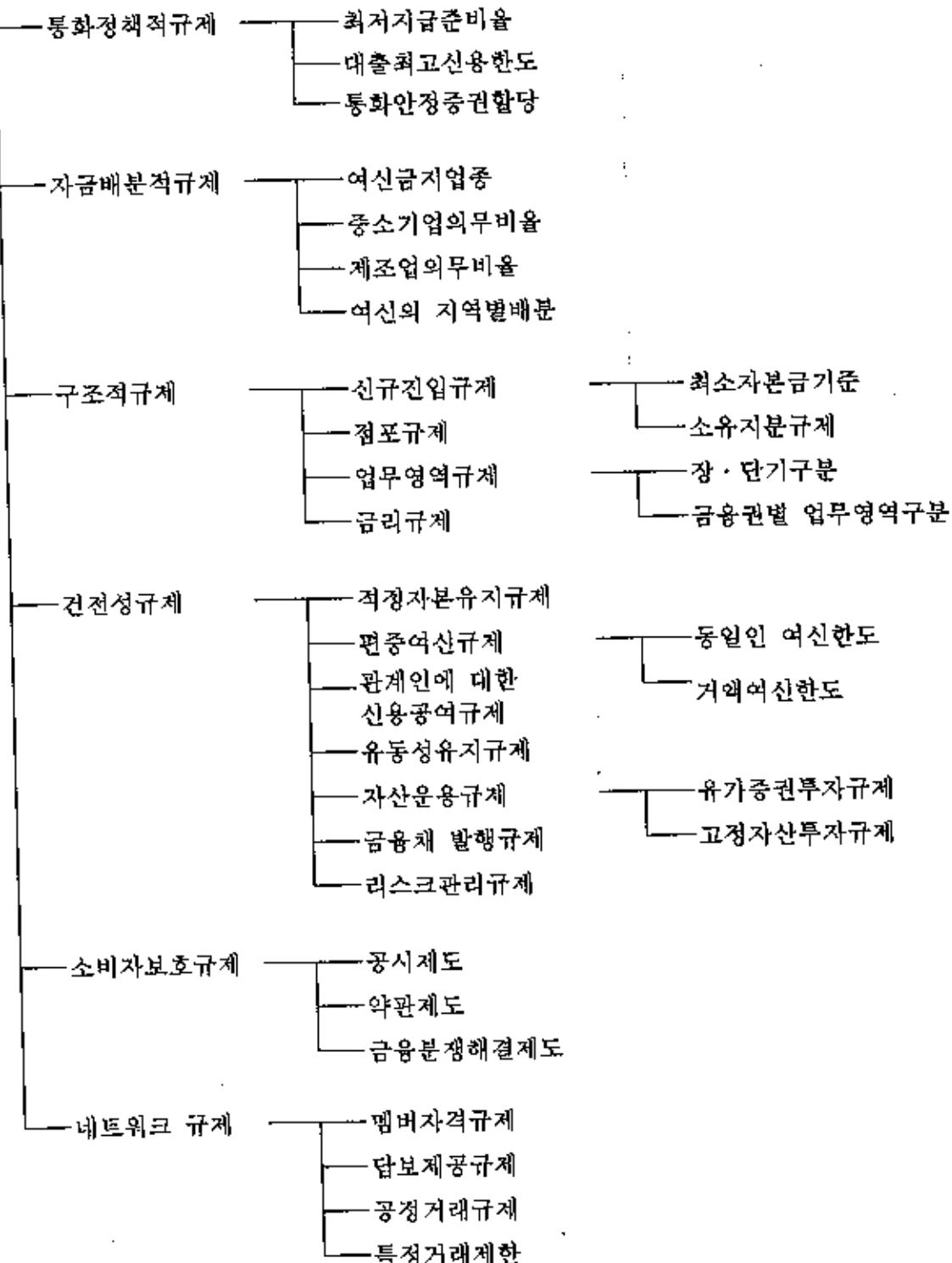
- 구조적 규제는 금융산업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금융과 산업의 분리,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등이며, 이는 이해상충 및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정자본의 보유, 위험의 분산, 적법한 회계처리과정 및 투명한 재정상태의 보고 등을 감독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에 의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네트워크 규제는 주식 및 트레이딩네트워크, 지급결제청산네트워크 및 정보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규제임.
-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규제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사정하기 위함임.

— 금융·통화 관련 규제의 담당기관은 재경부와 금감위이며, 규제개혁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는 총 928건에 달하였음.

- 금감위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의 영업활동과 기업의 자금조달활동을 규제함.
- 이를 위해 각종 업무, 행위에 대한 사전 인가·승인제, 영업한도, 비율의 제정, 영업 및 자금조달방법, 절차 등의 규정, 그리고 불법 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검사·감독 규제를 실시함.
- 반면 재경부는 금융과 외환부문 관련 규제를 담당하며,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였음.

* 2000년 5월 이후 금융기관 인·허가권, 특수은행에 대한 전전성
감독권한은 재경부로부터 금감위로 이관되었으며,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에 관한 법령 제·개정권은 재경부에 존속시키되 금감
위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음.

<그림 1> 사전적 규제의 규제목적별 분류



자료 : 김병연, 금융규제체계 재정립방안 : 자율규제기반 확대방안 모색, 한국금융연구원(2000)

나. 규제완화의 필요성

- 경제규모의 확대로 금융시장이 복잡·다기화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시장왜곡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저하 문제가 야기되었음.
 - 시장이 복잡·다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도의 생산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결정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페상적이 되고 따라서 정책실패를 초래할 위험이 커짐.
 - 금리규제, 소유제한규제 등을 포함한 각종 금융규제는 진입규제로 작용함으로써 영업중인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강화 등 내실위주의 경영보다는 시장지배력 확대 등 외형성장을 일차적 경영목표로 추구하였음.
 - 정경유착의 고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노력이 경시되었고, 금리규제, 진입규제 등 금융규제로 인해 사금융이 번성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낙후는 타산업에 대한 자금증개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금융산업은 그 산업의 본질인 자금증개의 특성상 타산업에 미치는 외부효과, 즉 파급영향이 가장 큰 산업임.
 - 금융산업이 본연의 기능인 자금증개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자금조달가격의 상승, 자금조달구조의 왜곡, 자금의 특정부문 또는 특정기업에로의 과도한 편중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됨.
 - 금융산업의 이러한 장애는 경제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도 저해하고 또 불균형화시킴으로써 국

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성숙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개입에 의한 과도한 인위적 자원배분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순기능보다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함.
 - 과거 개발시기에 정부는 금융부문을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성장정책 수단으로 이용하였음.
 - 실물경제지원이라는 정책패러다임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선정에서의 비형평성, 지원체계 및 방식에서의 비효율성 등으로 그 실효성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음.
 - 정부의 과도한 금융시장개입은 금융산업내 안이하고 소극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고착시키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풍토 정착을 지연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 진작을 저해하였음.
 -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및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집중배분은 과잉설비 및 중복투자 문제를 초래하였음.
- 또한 개방화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업무수행과 금융기관 감독측면에서 글로벌스탠다드가 적용, 국제적으로 동질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음.
 -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예금금리, 수수료, 금융기관 업무영역, 신종금융상품, 거래기법 등에 대한 규제가 급속히 완화 내지 폐지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경쟁제한적 규제는 폐지되는 반면 건전성규제는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규제비용 절감과 규제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자

을 규제도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금융상품 및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관 등장도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의 신축성 확보에 유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금융환경 및 기법의 발달로 규제비용이 규제수익을 앞지르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금융규제의 틀(framework)을 시대적 조류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완화 추진 현황

- 1990년대 이후 정부는 그동안 심화된 산업과 금융간 불균형 성장을 시정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1991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금리자율화가 진행되었으며, 금융상품의 발행조건, 만기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 내지 폐지됨에 따라 업무영역내에서의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는 상당부분 완화되었음.
- 특히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잔존규제의 등록, 신설규제의 심사 등을 통해 규제완화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규제완화의 기본방향은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 감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것임.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적 목적, 자금배분적 목적, 구조적 목적 등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대폭 완화하였음.

- 반면 건전성규제 목적, 네트워크 규제목적 및 소비자보호 목적 등의 규제는 건전성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한층 강화되고 있음.
- 또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의 적정성 관련 규제 및 편중 여신의 규제 등 자산운용관련 규제의 정비가 이루어졌음.

— 그 결과 금융·통화관련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초기인 1998년 대폭 축소되었으나, 이후 신설규제의 영향으로 2001년 6월 현재 약 816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음.

- 금감위는 1998년 한해에 총 630건의 규제사항중 폐지 315건, 개선 131건 등 446건을 정비하였으며, 재경부는 금융관련 규제 298건중 163건을 폐지하고 64건을 개선하는 등 227건을 정비하였음(<표 1 참조>).
- 2001년 6월 9일까지의 규제완화 사항을 고려할 때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통화관련 규제 중 429건이 폐지되었고 157건이 신설되었으며 142건이 추가 등록되는 등 총 317건이 증가되어 현재 816건이 규제사항으로 등록되어 있음.

<표 1> 1998년 금감위 및 재경부의 주요 금융업부문별 규제정비실적

	규제총수	폐지	개선	1998년 중 정비	존치
금감위관련 총규제 ¹⁾	630 (100.0)	315 (50.0)	131 (20.8)	446 (70.8)	184 (29.2)
은행	89 (100.0)	46 (51.7)	23 (25.8)	69 (77.5)	20 (22.5)
증권 ²⁾	332 (100.0)	167 (50.3)	68 (20.5)	235 (70.8)	97 (29.2)
보험	77 (100.0)	37 (48.1)	14 (18.2)	51 (66.2)	26 (33.8)
기타 ³⁾	132 (100.0)	65 (49.2)	26 (19.7)	91 (68.9)	41 (31.1)
재경부금융 관련 총규제	295 (100.0)	163 (55.3)	64 (21.7)	227 (77.0)	68 (23)
총계	925	478	195	673	252

주 : 1) ()안의 숫자는 총규제에 대한 백분율(%)임

2) 증권사, 투자신탁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및 증시자금조달기업 등 포함

3) 중금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사 등 포함

—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공통적으로 정비된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기관 임원의 인사사항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원자격요건을 네거티브제로 설정하여 최소화함.
- 다양한 금융부문의 경험을 통하여 금융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은 물론 각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겸직·겸업제한을 완화함.

- BIS기준 등 전전성지표를 통하여 각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부동산 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자율경영의 영역을 축소시킬 것이므로 전면 폐지함.
-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는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편중여신 문제가 심각하지 않거나 여타 간접적 방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경우 완화하였음.
 -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IMF와의 합의에 따라 상당부분 존치 또는 보완되었음.
-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영업소설치 제한 등 각 금융기관의 지점신설 및 이전 등에 대한 금감위의 인가 및 승인제도를 사후신고 및 보고로 완화함.

3. 향후 금융규제 정비방안

-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적합한 관련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감독비용을 최소화함.
- 금융산업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규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체적 목적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규제목적 달성의 대체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전전성 규제, 네트워크 규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등 시장친화적규제 목적 이외의 규제목적은 추구하지 않도록 함.
- 시장친화적 규제라 할지라도 네트워크 규제 및 소비자·투자자 보호 목적의 규제는 가급적 자율규제 또는 공시제도의 강화에 의한 시장 규율에 의존하는 방안을 채택함.
- 반면 산업정책적 목적, 국민경제적 목적과 아울러 통화정책적목적 및

자금배분 목적 등의 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토록 함.

- 다만 구조적 규제에는 경쟁제한적 목적이와에 전전성규제 목적 등 다수 목적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경쟁제한적 목적의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전전성규제는 규제완화 및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 함.

가. 사후 감독의 강화

- 사전적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서 감독당국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
- 반면 감독은 인정된 활동이 인정된 범위와 기준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감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전문성 및 감독기능의 효율성이 확보되기까지에는 사전적 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그러나 사전적 규제는 많은 활동을 사전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경영 혁신을 저해하고 신상품개발을 제약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저하하게 하는 부작용을 수반함.
-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완비하고 감독기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구비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제형태의 전환은 규제완화의 효과 이외에도 금융기관이나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시스템개발을 촉진 함으로써, 규제를 우회하려는 각종수단의 개발을 통하여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효과를 억제할 수 있음.

나. 업무영역의 확대

- 그 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전업주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고유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왔음.
 - 현재 금융산업 업무영역조정은 은행, 증권, 보험을 3대축으로 하며 고유업무는 분업주의를 유지하되 타금융권의 고유업무에는 자회사를 통한 진출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왔음.
 - 또한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 개별법령에 따라 금감위에 신고(증권) 또는 허가(보험)를 받아야 함.
 - 은행의 경우,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채무보증 등 16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영업가능여부 결정을 재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업무영역 제한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는 금융혁신의 급속한 진전으로 그 실효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음.
 - 현재 자회사를 통한 겸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도 도입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업무영역의 확대가 불가피함.
-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에 있어서 고유업무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되 기타업무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함으로써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경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은행과 보험의 겸영형태인 망카슈랑스의 경우 2003년 8월까지 유보된 상태이며, 앞으로 보험사의 경영과 지급여력 등에 미치는 영

향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생보는 장기저축성 상품의 성격이 강하고 손보는 단기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생보와 은행의 방카슈랑스 형태가 적절할 것임.

— 또한 종금사와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여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증가하고 마진을 획득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는 달리 증권의 인수나 매매 등 가격변동위험이 수반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여 투자수익을 수취하는 기관임.

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 현 금융권별 업무영역은 그 영업인가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포지티브 시스템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소극적 방법이며 가능한 업무만 열거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가 네거티브 시스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함.
- 네거티브 시스템은 경업 금지업무(은행·증권·보험·고유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금지되지 않은 업무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경영하는 체제임.
- 또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업무영역규제는 허가권 등에 의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업무영역 제한은 금융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 및 신상품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금융시장의 동태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포지티브 시스템 하에서 허용 업무로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는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복잡한 약관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상품 시판일자 자연 등으로 인한 상품개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업화의 영향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네거티브 시스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금융권별로 제정된 법과 금융감독업무도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라. 비명시적 규제의 폐지

- 비명시적 규제는 법적 혹은 공식적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창구지도, 전화 등을 이용한 통보 및 자료요청, 친밀한 친분관계, 도덕적 권유 등에 의한 규제 및 감독행태를 의미함.
- 비명시적 규제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거나 규제내용의 합목적성 결여로 정부 및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따라서 규제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 및 제재방식, 규제 내용의 합목적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통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명시적 행정지시와 행정감독이 많은 것은 준칙주의가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칙주의를 재정립함.

마. 유인부합적 규제로의 전환

-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하여왔기 때문에 지시명령적 규제가 고착화되어 있음.
 - 특히 하위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설정된 각종 지도, 지시 및 기준의 설정은 바로 지시명령적 규제의 틀을 유지시켜온 근간임.
- 금융활동이 점차 복잡·다기화되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은 금융거래자들의 모든 활동을 직접 규제·감독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유인부합적 (incentive-compatible)인 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유인부합적인 규제시스템이란 일정한 규제시스템하에서 피규제자들이 스스로의 유인에 따라 행동하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내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임.
- 각종 행정지시와 시달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이러한 지시와 시달 등을 통하여 얻으려고 제정된 각종 규제를 BIS 자본비율이나 CAMELS 등 경영평가제도와 같은 사후 평가시스템 중심의 규제체계에 통합함으로써 시장유인적 규제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4. 규제완화시 유의사항

가. 규제완화시 문제점

- 향후 규제완화가 계속되고 금융환경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점들로는 금융산업내 구조적 위험의 증가,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증대,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위험 등임.

- 구조적 위험은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등을 포함하는데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구조적 위험의 원천 자체가 증가하며 아울러 금융규제완화가 시장참여자들의 자유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구조적 위험에의 노출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규제완화로 인한 규제의 공백과 제도변환과정에서의 혼란속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불법행위 또는 도덕적 해이 등이 지속되거나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간 및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과정에서 국내 일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감독기능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금융규제의 완화란 정부의 통제범위를 줄이고 민간부문 자율의 폭을 확대하는 것인데 금융산업을 둘러싼 여타 환경요인들이 변하면서 금융산업을 각종 위험에 노출케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규제당국과 금융기관들은 규제완화 이후 경쟁심화 등이 초래될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나.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사례

-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친 금융위기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초래되었음.
- 미국은 1980년대초 저축대부조합(S&L) 등 예금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제한에 의해 비예금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이탈함에 따라 이자율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였음.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축대부조합의 예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의회는 규제완화를 계속하여 심각한 투기적 가능성이 있는 상업용부동산 대출도 자산의 40%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하였음.
- 이러한 규제완화는 부실화된 저축대부조합의 수지를 개선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나, 전전성감독에 대한 강화 없이 이루어진 관계로 예금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부실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 또한 미국 금융위기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미국 예금보험공사 (FDIC) 검사역의 대규모 이직에 따른 검사인력 부족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시감시모델 사용에 따라 감독기관이 임점검사 (on-site examination)를 소홀히 한 점에도 기인함.

5. 마침글

-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환경하에서 정보획득 및 새로운 금융기법 획득에 있어서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 뒤떨어질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의 규제를 탄력있게 적용시켜야 할 것임.

- 그러나 준비 없는 규제완화는 규제로부터 발생되는 규제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완대책의 마련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및 적기시정조치의 적절한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함.
 -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함으로써 감독기강을 확립함.
 - 금융감독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이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감독체계를 구축함.